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20
----------	------

발의연월일 : 2017. 9. 1.

발 의 자 : 이장우 · 이종배 · 이철규
김한표 · 염동열 · 김석기
이진복 · 권석창 · 이양수
이현승 · 성일중 · 강석진
김도읍 · 민경욱 · 나경원
김성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많은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가짜뉴스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제3호부터”로 한다.

2의2.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3. ~ 9. (생략)</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u>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u>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p>	<p>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u></p> <p>3. ~ 9.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제3호부터</u>----- ----- ----- ----- ----- -----.</p>

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④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3. ~ 7. (생략)

②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한 자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